

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13.3.23> [시행일:2012.7.1] 특별자치시와 특별
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제	호	신	분	증	사 진 (2.5cm×3cm)
성	명				
생	년	월	일		
주	소				
유효기간	20	.		.부터	
	20	.		.까지	
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 사·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국 토 교 통 부 장 관					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[인]					
시 장 · 군 수					

86mm×50mm(보통용지(1종) 120g/m²)